

● 제285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##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검토보고서

2019. 3. 4.

보건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【김태수 의원 발의】

의안번호 295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김태수 의원 발의(찬성 11명)
- 나. 제출일자 : 2018년 12월 2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12월 28일

#### 2. 제안이유

- 가.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어린이 ·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 · 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,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환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(제11조제5항)
- 나. 어린이 ·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 · 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제12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하고, 어린이·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·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,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안된 안임.

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# 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동 조례 개정안 제9조(아래 표 참조)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“위원의 해촉” 을 “위원의 위촉을 해제할”로 바꾸는 안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안임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) ① ~ ⑤ (생략)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<u>해촉 할</u> 수 있다. 1. ~ 5. (생략)	제9조(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<u>위촉 해제 할</u>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
- 다음으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에서 지정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같은바 상위법을 반영한 내용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) ① ~ ④ (생 략)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11조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<신 설>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<신 설>	2.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<신 설>	3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<신 설>	4.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
- 마지막으로 안 제12조(아래표 참조)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설이나 장비 외에도 과일이나 채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이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아닌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교육보조재료 성격의 지원으로 파악할 수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, <u>시설 · 장비</u> 등 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2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 ① ----- ----- ----- <u>과일 · 채소 등 간식, 시설 · 장비</u>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나. 상위법과 비교

- 개정안은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의 주요사항을 반영하는 것임.
-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5조의2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. 동 조례 개정안은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5조의2제5항과 이에 따른 각 호를 반영하여 신설하는 것인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
<u>&lt;식생활교육지원법&gt;</u>
<p>제25조의2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</li> <li>2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li> <li>3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4.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</li> </ol>

※ 다만 동조례개정안 제12조의 경우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. 그러나 상위법의 모든 사항이 해당 조항에 반영되지 않아 필요시 대안의 입법이

나 추후 입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음.

현행안	식생활교육지원법
제12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, 시설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2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·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</li><li>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·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</li><li>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</ol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, <u>과일·채소 등 간식, 시설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, 농어업인,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	<p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</p>

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3 종합의견

-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. 다만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에 따른 집행부 사업계획의 일부변경(간식 등 지원) 등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.